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9 조 및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5 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 1 항 제 1 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 1 항 제 2 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 10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 8 조 제 1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 17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 4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 8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 8 조 제 1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 8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 23 조 내지 법 제 29 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 2 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 7 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산직할시사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 8 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